

의안번호	2200446
의 퇴 인	구자근의원
회 답 일	2024.06.27
추 계 번호	24D0808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폐지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8억 5,200만원, 2029년 28억 3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0억 4,500만원(연평균 32억 9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대구지방법원 소속 구미지원 설치 (안 [별표1], [별표2], [별표3] 및 [별표7])	2,852	3,755	3,815	2,784	2,839	16,045	3,209

- 주: 1. 대구지방법원 소속 구미지원 설치(안 [별표1], [별표2], [별표3] 및 [별표7]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, 유사사례인 경주지원을 참고하여 총 46명의 공무원이 증원되고 구미시법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2. 구미지원에 총 4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(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)과 자산취득비, 구미시법원 증축비용과 증축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한정하여 추계
3.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의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는 10개월분을 추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[별표1](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), [별표2](시·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), [별표3](고등법원·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) 및 [별표7](시·군법원의 관할구역)	구미시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폐지하고 대구지방법원 소속 구미지원을 신설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[별표1](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), [별표2](시·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), [별표3](고등법원·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) 및 [별표7](시·군법원의 관할구역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미지원은 관할 자치단체 수가 1개로 같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경주지원¹⁾(이하 “경주지원”이라 함)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대구지방법원 소속의 다른 지원(서부, 안동, 포항, 김천, 상주, 의성, 영덕)은 1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어 본 추계에서는 경주시를 관할하고 있는 경주지원의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하기로 함
- 개정안에 따른 구미지원 소속 공무원은 경주지원 소속 공무원 규모로 운용하되, 기존 구미지법원 인력(7명)을 제외한 인원을 증원
 - 경주지원의 판사 정원은 8명이고 소속 공무원 정원은 53명이며, 판사의 수는 「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」에 따라 3,214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판사의 증원을 고려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구미지원의 청사는 현 구미지법원 청사²⁾를 증축하여 사용하되,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증축기간에는 구미지법원 청사 사용을 중지하고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

1) 현행법 [별표 3] 및 [별표 5]에 따르면, 경주지원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에 동시에 소속되어 경주시를 관할하고 있으며, 1개의 민사·가사 합의부와 4개의 민사단독재판부, 2개의 형사단독재판부, 3개의 가사단독재판부로 구성되어 있고 판사 정원은 8명(현원은 7명)

2) 구미지법원 대지면적(4,551㎡), 연면적(1,368.99㎡), 2층 건물로 1층은 등기소 2층은 구미지법원

- 공무원임금상승률³⁾ 및 소비자물가상승률⁴⁾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
- 개정안 부칙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- 비용추계의 대상은 구미지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인원 인건비 등과 청사 임차 및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임

가. 인건비 등

- (공무원 증원인원) 전제한 바와 같이 경주지원 소속 공무원 정원(53명)에서 현 구미시법원 공무원 정원(7명)을 제외하여 46명으로 산출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구미지원 공무원 직급별 정원 및 증원인원 추정: 2023년
(단위: 명)

구분	경주지원 공무원 정원(A)	구미시법원 공무원 정원(B)	증원인원(A-B)
4급	2	—	2
5급	1	—	1
6급	9	—	9
7급	10	4	6
8급	13	2	11
9급	18	1	17
합계	53	7	46

자료: 대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(2024.4.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
공무원임금 상승률	1.7%	2.5%	1.9%	1.9%	1.9%	1.9%

4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4.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	3.6%	2.6%	2.2%	2.2%	2.1%	2.1%	2.1%

□ (보수) 구미지원 신설에 따른 공무원 증원인원(46명)에 대한 2023년 기준 적용 추정 보수액(21억 100만원)⁵⁾을 기준으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반영하면 보수는 2025년 18억 2,9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110억 3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 보수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보수	1,829	2,236	2,279	2,322	2,366	11,031	2,206

주: 구미지원이 2025년 3월 1일 개원하므로 2025년 추가재정소요는 10개월분만 추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기관부담금) 증원인원(46명)에 대한 연도별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연도별 기관부담금 요율⁶⁾을 적용해 산출한 기관부담금은 2025년 2억 4,0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14억 6,9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관부담금	240	295	303	311	319	1,469	294

주: 구미지원이 2025년 3월 1일 개원하므로 2025년 추가재정소요는 10개월분만 추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기본경비) 증원인원(46명)에 대한 연도별 보수에 2024년도 대법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인 6.5%를 적용하여 산출한 기본경비는 2025년 1억 1,9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7억 1,700만원으로 추계됨

5)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 보수 소요액 추정: 2023년 기준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직급별 보수						합 계
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
1인당 보수(A)	88	76	67	53	38	30	—
증원인원(B)	2	1	9	6	11	17	46
보수 소요액(A×B)	176	76	603	318	418	510	2,101

주: 1인당 보수는 2023년 경주지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보수액임

자료: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6) 기관부담금 요율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기관부담금 요율	12.999%	13.004%	13.114%	13.210%	13.305%	13.399%	13.494%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기본경비	119	145	148	151	154	717	143

주: 구미지원이 2025년 3월 1일 개원하므로 2025년 추가재정소요는 10개월분만 추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자산취득비) 총 정원(61명)⁷⁾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2025년 1인당 자산취득비(491만원)를 적용하여 산출한 자산취득비는 3억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증원인원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자산취득비	300	-	-	-	-	300	60

주: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2025년 자산취득비는 1인당 491만원(2024.4.기준)으로, 동년도에 일괄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청사 임차 및 증축비

□ (임차료 등) 청사 임차료는 소요면적당 임차료를 곱하여 산출하고, 관리비는 임차료 대비 50%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임차료와 관리비는 2025년~2027년 3년간 10억 200만원으로 추계됨

- 구미지원 직원 1인당 평균 업무용면적을 29㎡로 가정하고⁸⁾, 총 정원(61명)을 곱하면 전용면적은 1,769㎡이며, 2023년 전국 오피스빌딩 전용률 평균 57%⁹⁾로 나눠서 산출한 공급면적은 3,104㎡임
- 공급면적에 경북지역 오피스 월 평균 임차료(5,900원/㎡)¹⁰⁾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25년~2027년 3년간 임차료를 추산함
- 관리비는 임차료의 50%로 가정

7) 공무원 53명, 판사 8명

8) 경주지원의 1인당 업무용 면적이 65.8㎡로 전국 중앙청사 평균 1인당 업무용 면적보다 현저하게 크므로 본 추계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「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(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 설립, 운영 단가 현황 연구)」의 중앙청사 1인당 평균 업무용면적인 29.0㎡를 참고하기로 함

9) 한국부동산원, 「2023연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」, 17쪽

10) 한국부동산원, 「2023연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」, 13쪽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임차료 및 관리비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임차료	192	236	240	—	—	668	134
관리비	96	118	120	—	—	334	67
소계	288	354	360	—	—	1,002	200

주: 구미지원이 2025년 3월 1일 개원하므로 2025년 추가재정소요는 10개월분만 추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청사 증축비용) 구미지원 청사 증축비용은 공사비와 부대비용의 합으로 2025년에 설계비 등 부대비용이 집행되고 2026년~2027년 2년간 공사비가 집행되어 총 15억 2,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

- 구미지원 청사 연면적은 총 정원(61명)을 적용하여 1,769㎡로 추계되고, 여기서 현 구미시법원의 연면적(1,368.99㎡)을 뺀 만큼의 연면적(400㎡)을 증축하는 것으로 추계
- 위에서 산정한 증축 연면적에 2026년 기준 조달청의 「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」에 따른 공사비 단가¹¹⁾(㎡당 3,625,122원)를 곱하면 공사비는 14억 5,000만원으로 추계
-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4.03%, 감리비는 1%, 시설부대비용은 0.23%을 적용¹²⁾하고, 이들을 모두 합한 부대비용은 5.26%인 7,600만원으로 추계
- 이 중 부대비용을 2025년에 집행하고 공사비를 2026년~2027년 2년간 매년 절반씩 집행할 경우 연도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용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공사비	—	725	725	—	—	1,450	290
부대비용	76	—	—	—	—	76	15
소계	76	725	725	—	—	1,526	30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1) 조달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「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」에 2024년 대비 2025년 단가 상승률(4.67%)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6년 공사비를 추정

12) 국회예산정책처, 「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단가 정책연구보고서」, 2023.

다. 추계결과

- 대구지방법원 소속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8억 5,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0억 4,500만원(연평균 32억 900만원)으로 추계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인건비 등(A)	2,488	2,676	2,730	2,784	2,839	13,517	2,703
청사 임차 및 증축비(B)	364	1,079	1,085	0	0	2,528	506
합계 (A+B)	2,852	3,755	3,815	2,784	2,839	16,045	3,209

주: 구미지원이 2025년 3월 1일 개원하므로 2025년 추가재정소요는 10개월분만 추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관할구역 수와 인구수가 유사한 법원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